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1. . .
발 의 자	강승수 의원 외 7명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승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강승수 · 김낙관 · 박교상 · 신문식
안주찬 · 이선우 · 장미경 · 최경동
의원(8인)

1. 제안이유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로당의 CCTV 설치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등록 노인수 당 연면적 상한 기준을 높여 이용자가 과밀한 곳은 더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기준 개정(안 제3조)
- 나. 지원기준 개정(안 제6조)
- 다. 관련규칙 명칭변경(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4.21.~4.28.)결과 의견 없음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와 개보수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활동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경로당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속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멸실을 포함한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20퍼센트를 초과하는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경로당 연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보수”란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종으로서 건축물의 고유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8. “추진위원회”란 마을회가 추천한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경로당 건립 부지 확보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 ① 경로당의 규모는 신축 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경로당 등록 노인수 1명당 1.2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연면적을 정할 수 있다.
- ② 경로당은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고 화장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및 개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조건)

-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 사업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
 - 가.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경로당 건축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을 시장 명의로 이전한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사업에 포함되어 건축 가능한 부지를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확보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자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방법으로 경로당 건축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재건축 및 증축 :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시장 명의로 등기된 경로당

3. 리모델링 및 개보수 : 경로당 건축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는 경로당. 이 경우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가. 시장

나. 마을회

다. 노인회(경로당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대상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경로당 1개소 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 재건축 : 3억원 이내
2. 증축, 리모델링 : 5천만원 이내
3. 개보수 : 2천만원 이내

제7조(비용부담)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순위)

① 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별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신축 및 재건축

가. 노후·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의 재건축

나.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경로당의 대체 신축

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라.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증축 및 리모델링

가. 노후·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의 대수선 리모델링

나. 건립연도가 오래된 경로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다.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의 증축 및 리모델링

3. 개보수

가. 건립연도가 오래된 경로당

나.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

② 제1항제1호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건축 부지를 추진위 등에서 자체 확보하여 구미시로 기부채납한 경우, 국가 및 지방의 대규모 사업으로 건립부지 확보 시, 그 외 순으로 한다.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로당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는 마을회가 추천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에는 위원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④ 추진위는 부지확보 등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의 주체로서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

제10조(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위는 해당 읍·면·동장의 실태 파악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계획서
2. 보조금 지원신청서
3. 건축물 소유자의 보조사업 동의서

제11조(보조금 집행)

- ① 추진위가 보조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③ 추진위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용, 증빙자료, 공사 사진 등)
 2.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3. 보조금 통장 사본 등

제12조(지원제외)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로당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

제13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4조(목적 용도변경 등의 제한) 시장 명의를 아닌 경로당을 보조사업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건축물을 경로당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이나 처분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로당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제3조) 및 신축, 재건축 비용 지원 증액(안 제6조)에 따른 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0	0	0	0	0	0
세출	○ CCTV 설치비	5,400					5,400
	○ 신축·재건축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5,400	30,000	30,000	30,000	30,000	155,400
□ 총 비용(b-a)		35,400	30,000	30,000	30,000	30,000	155,400

○ CCTV 설치비

- 1대당 3백만원 × 미설치 개소수 18개소 = 54백만원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계				3,000,000	
1. 재료비					
N.V.R	HD 4CH	1	EA	500,000	500,000
H.D.D	1TB	1	EA	100,000	100,000
LED MONITOR	LED 22'	1	EA	220,000	220,000
POWER DISTRIBUTOR	AC 220V, 60Hz	1	EA	400,000	400,000
NETWORK IR AMERA	200만, 2.7~12mm, IR	1	EA	850,000	850,000
RACK CABINET	19", H:1200	1	EA	200,000	200,000
CCTV 안내판	안내문구	1	EA	130,000	130,000
2. 설치노무비					
CCTV 설치	통신설비공 외	1	식	400,000	400,000
3. 배관설치비					
배관배선비 및 노무비	배선비 및 설비공 외 (10m 기준)	1	식	200,000	200,000

○ 신축, 재건축비

- 1개소당 건축비(설계용역비, 공사비) 2억원 +

[토목비(설계용역비, 공사비) 7천만원 + 철거비 2천만원 + 기타부대비용] 1억원

= 3억원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도비						
시비	35,400	30,000	30,000	30,000	30,000	155,400
민간						
기타						
합계	35,400	30,000	30,000	30,000	30,000	155,400

4. 부대의견

○ 경로당 개소 당 CCTV 설치여건이 상이하여 필요 대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신축 및 재건축하는 경로당마다 사업부지 등의 특성이 상이하여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정책담당 양재호 (480-5151)